#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28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한민수·손명수·복기왕

김 현・김우영・허 영

정성호 · 김태선 · 박민규

정동영・박상혁・황 희

이기헌 · 황정아 · 박홍배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및 매매 등에 대한 정보와 자살유발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등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 매매등에 대한 정보는 서면의결이 허용되지 않아 대면 심의 및 의결까지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

살유발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 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 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 4.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의 법률에 따

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매매, 매매 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2조(회의 등) ① ~ ③ (생 제22조(회의 등)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 ④ -----다음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 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 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 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신 설>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 당하는 내용의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신 설> 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 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u>&lt;신 설&gt;</u>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u>&lt;신 설&gt;</u>	4. 「형법」, 「사행행위 등 규
	제 및 처벌 특례법」 등의 법
	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
	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
	<u>의 정보</u>
<u> &lt;신 설&gt;</u>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u> &lt;신 설&gt;</u>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매
	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
	는 내용의 정보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